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29
----------	-------

발의연월일 : 2026. 2. 5.

발 의 자 : 김도읍 · 김은혜 · 구자근
박성훈 · 김형동 · 조배숙
김미애 · 이현승 · 백종현
정점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기와 항공시설에 대한 조류충돌 예방강화가 대두되고 있음. 실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안전장애는 2,596건으로 항공안전장애 전체의 절반가량(4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항공기 조류충돌은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1,247건 발생하였으며, 5년 새 88%나 급증하였음.

이처럼 항공기 조류충돌의 위험이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현행법상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류유인시설’과 ‘조류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분명하여 조류예방 및 타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ICAO에서는 공항 표점으로부터 반경 13km 이내를 조류충돌 위험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8km로 제한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류충돌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의 범위 지역을 ‘조류유인시설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조류충돌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56조제5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037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5항 중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항 주변에”를 “위하여 공항 표점에서 1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을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으로, “오물처리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을 “환경”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설치금지 대상이 되는 “조류유인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공항 표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037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금지행위) ① ~ ④ (생략) ⑤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u>오물처리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u>해서는 아니 된다. <후단 신설> ⑥ · ⑦ (생략)	법률 제21037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금지행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위하여</u> <u>공항 표점에서 1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을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u> ----- -----<u>환경</u>----- ----- ----- -----<u>설치금지 대상이 되는 “조류유인시설”의 종</u> <u>류에 대해서는 공항 표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⑥ · ⑦ (현행과 같음)